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1039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1855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103964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신정민

원고 승계참가인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신정민

피 고 1. 주식회사 I

2. 주식회사 J

3. 주식회사 K

4.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박재용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

1. 피고 주식회사 I과 피고 주식회사 J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0,000,000원, 원고 B에게 215,760,000원, 원고 C에게 143,840,000원, 원고 D에게 90,000,000원, 원고 E에게 99,558,760원, 원고 F에게 43,210,000원, 원고 G에게 5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J와 피고 주식회사 K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9. 체결된 양도약정 및 2020. 9. 16. 체결된 매매약정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K는 피고 주식회사 J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20. 6. 1. 접수 제912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10. 6. 접수 제1460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J와 피고 L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5. 체결된
양도약정 및 2020. 10. 6. 체결된 매매약정을 각 취소한다.

5. 피고 L는 피고 주식회사 J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6. 17. 접수 제99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10. 12. 접수 제147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주식회사 J와 피고 M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5. 체결된
양도약정 및 2020. 10. 7. 체결된 매매약정을 각 취소한다.

7. 피고 M은 피고 주식회사 J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6. 17. 접수 제992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10. 12. 접수 제147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주식회사 I과 피고 주식회사 J는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65,368,76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및 원고들 청구취지 제2 내지 7항과 같음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N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원고들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8. 위 법원으로부터 “N 등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5,000,000원, 원고 B에게 215,760,000원, 원고 C에게 143,840,000원, 원고 D에게 90,000,000원, 원고 E에게 99,558,760원, 원고 F에게 43,210,000원, 원고 G에게 5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가합4981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이전

1) N은 군포시 O 외 1필지 지상에 P 건물을 신축한 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5. 11. 17.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피고 I은 2015. 11. 17.부터 2016. 2.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J는 2020.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고 한다)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K는 2020. 6. 17. 그 중 Q호에 관하여는 피고 L에게, R호에 관하여는 피고 M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K는 2020.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피고 L는 Q호에 관하여, 피고 M은 R호에 관하여 각 2020. 10. 12.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채권양도

원고들은 2021. 2. 9.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가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2021. 11. 12.경 N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들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은 N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① N과 피고 I, J는 모두 A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② N과 피고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자산이 없었던 점, ③ 피고 I이 N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면서 같은 날 또는 그 직후 피고 I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한 점, ④ 피고 I이 N에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피고 I이 N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 J가 피고 I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대가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 J는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고, 본점 소재지의 현황이 전답이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I, J가 원고들에 대하여 N과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I, J는 법인격이 부인되어 N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J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K, L, M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K, L, M은 약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들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J와 피고 K, L, M 사이의 각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K, L, M에 대하여 원물반환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I, J, K, L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최종적으로 마쳐진 2016. 2. 16.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I, J를 상대로 법인격남용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은 피고 J와 피고 K, L, M 사이의 각 양도행위이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위 각 양도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 역시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N으로부터 피고 I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정조서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터잡은 후속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N으로부터 피고 I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정조서에 의한 것이어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K, L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말소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J와 피고 K 등 사이의 양도약정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K 등을 상대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후속 등기에 관한 독자적인 말소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A에 대한 소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 A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주장에 기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법원에 피고 I, J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2018가합1044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소송은 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 A이 이 사건에서 N과 피고 I 사이의 매매약정 등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모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N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N, 피고 I, J는 모두 A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② N의 대표이사인 AC가 피고 I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J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③ N은 P 건물 이외에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④ N으로부터 피고 I로 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인천지방법원 2015머20664 조정조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각 호실별로 13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그 자체로 건물 전체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한 것으로 보이며, ⑤ N과 피고 I, J의 영업 목적이 일부 중첩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 제3, 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N과 피고 I, J는 설립 목적이나 경영진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주주 구성도 다른 사실, ② AC가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N 소유의 P 건물을 피고 I에 헐값에 양도하여 N에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피고 I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되었으나, AC 등이 공시지가 합계 약 54억 원의 P 건물을 피고 I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 I로부터 약 6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③ AB의 채권자인 AD가 피고 I, J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26. “N이 AB 및 피고 I과 공모하여 원고(AD)의 AB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P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피고 I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AD) 패소 판결을 하였고(2018가합62798),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천)은 2021. 3. 26. 동일한 판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2020나13166)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N과 피고 I, J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나아가 N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I, J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은 N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I, J에 청구할 수 없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I, J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K, L, M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선희, 판사 이희수, 판사 김수민

[별 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경기도 군포시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기계실

제1층 762.631㎡

제2층 762.631㎡

제3층 762.631㎡

제4층 762.631㎡

제5층 762.631㎡

제6층 762.631㎡

제7층 762.631㎡

제8층 618.763㎡

지하 제1층 778.95㎡

지하 제2층 778.95㎡

지하 제3층 778.95㎡

지하 제4층 718.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41.792㎡

2. 동 소: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8.875㎡

3. 동 소 :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5.811㎡
4. 동 소 :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8.312㎡
5. 동 소 :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2㎡
6. 동 소 :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4.875㎡
7. 동 소 :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2.000㎡
8. 동 소 :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5.811㎡
9. 동 소 :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8.25㎡
10. 동 소 :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21.891㎡
11. 동 소 :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5.425㎡

이상 끝.

